

제2편 학칙 및 내규

학 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우리 대학교는 믿음(信).소망(望).사랑(愛)을 실천하는 가톨릭 신앙을 이념으로 설립 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이 이념 아래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꽃동네의 인간존중 생명 사상을 실현하고, 인류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을 교수.연구하며, 인격을 도야 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999.9.1. 및 2001.9.1. 자구수정)

제2조(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는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간호학과, 자율전공 학부를 두며, 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학위수여는 별표 2와 같이한다. (1999.9.1. 자구수정 및 학부 입학정원 조정 및 2005.11.22. 간호학과 신설로 개정) (2015.4.28 학부 입학정원 조정) (2017.5.1. 학부구조 개편)(2019.4.24. 학부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2020.4.21. 학부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2021.4.22. 학부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2022.4.22. 개정) (2024.2.16. 개정)

② 제1항의 학부, 학과 외에 연계융합전공, 소단위 전공과정, 학생설계전공 등을 둘 수 있다. (2023.6.21. 향 신설) (2024.2.16. 개정)

③ 간호학과로 입학하지 아니한 자는 간호학과를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2024.2.16. 향 신설)

④ 제1항 및 2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23.6.21. 향 신설)

별표 1. 학부(과)별 입학정원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	0명
자율전공학부	-	30명
간호학과	-	78명

별표 2. 학부(과)별 수여학위 종별표

학부(과)	전공	학위명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문학사 문학사
간호학과	-	간호학사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 연한

제3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2021.6.22. 개정) (2023.2.7.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칙 제28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수업연한

을 1학기 내지 2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2023.2.7. 개정)

1. 재학 기간의 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자
2. 학칙 제39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은 신입생
3.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자(1학기까지 단축)

제4조(재학 연한) ① 각 학부(과)의 재학 연한은 수업연한(편입학자는 본 대학교에서 수업할 연한,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에 수업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19.4.24. 개정)(2022.4.22. 개정)

②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학 연한 내에 각 학부(과)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2019.4.24. 개정)(2022.4.22. 개정)

제 3 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2학기로 한다. (2001.9.1. 단서조항 추가)(2023.2.7. 단서조항 삭제)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③ 전학의 학기 외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 및 개강일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23.2.7. 신설)

제6조(수업)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2024.2.16. 개정)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 수업, 현장실습수업, 집중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3.2.7. 신설) (2023.11.14. 개정)

③ 만학도(입학 연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로 입학한 자와 편입학 학생의 수업은 주말 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 및 강의평가 내부 지침을 따른다. (2023.11.14. 개정)

④ 삭제 <2023.11.14.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2024.2.16. 항 신설)

⑥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5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27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4.2.16. 항신설)

제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교기념일, 국정 공휴일, 일요일로 한다.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6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2주의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2011.8.17 자구수정)

③ 휴업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2001.9.1. 자구수정)

제 4 장 입 학

제8조(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 및 편입학은 학기 초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9조(입학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0조(입학 지원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2.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 기타 지정하는 서류

②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01.9.1. 자구수정 및 조항추가)

제11조(입학전형) ① 신입생 선발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정한다.

1. 출신고등학교의 내신성적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3. 대학별 고사 성적
4. 면접고사 성적
5. 기타 필요한 자료

② 대학별 선발 고사의 과목 및 입학 전형기일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발표한다.

③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하는 대학입시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1.9.1. 자구수정)

제12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허가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 (2001.9.1. 자구수정)(2019.2.8. 개정)(2021.4.22. 자구수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021.4.22. 신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13조(등록) ①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재학생 서약서와 보증인 보증서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는 외에 본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01.9.1. 자구수정)

제14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이어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보증인의 주소와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보증인을 정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편입학) ① 본 대학교의 3학년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③ 편입학생은 조기 졸업을 할 수 없다.

④ 본 대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 또는 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2021.4.22. 개정)

⑤ 편입학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학사편입학)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3학년에 편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편입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입학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2019.2.8. 개정)

③ 학사편입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정원 외 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정원 외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하며 퇴학 후 5년(군복무기간 포함)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야 하고 퇴학전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학년 이하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학 후 5년을 경과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재입학을 결정한다. (2008.3.1. 단서조항수정) (2022.4.22. 개정)

② 학칙 제40조에 의하여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당해 모집단위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 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총장이 재입학을 결정한다. (2008.3.1.신설) (2019.4.24. 개정)

③ 학칙 제52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2008.3.1. 수정)

제 5 장 전과 (2019.4.24. 개정)

제19조(전과) ① 전과는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005.3.1. 자구수정)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4.22. 개정)

② 전과를 허용하는 학부(과)별의 범위와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9.4.24. 개정)(2020.4.21. 개정)(2022.4.22. 개정)

제 6 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0조(휴학) 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2001.9.1. 자구수정)

제21조(휴학 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 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합산하여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2023.12.19 개정)

제22조(임대 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 ① 재학 중 군입대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21조 제2항에 관계없이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3.4.22 항목추가)

② 입대 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3.4.22 항목추가)
제23조(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 기간 만료 및 휴학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 초 복학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③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9.1. 및 2001.9.1. 자구수정)
제24조(자원퇴학)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2001.9.1. 자구수정)

제2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2001.9.1. 자구수정)

1.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1개월 이상 계출 없이 결석한 자
3. 소정 기한 내(휴학 기간 만료자 포함)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
6. 학칙 제40조에 해당되는 자
7. 학칙 제52조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자

제 7 장 교과와 이수

제26조(교과과정) ①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2020.4.21. 개정)

②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 각 학부(과)의 교과과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2.4.22. 개정)

제27조(학점) ① 교과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1학기당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등과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주 2시간 이상 1학기당 30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2009.3.1. 자구수정)

② 한국 가톨릭계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CU12)의 공유 교과목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3.2.7. 신설)

③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한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4. 8.26. 신설)

제28조(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2005.3.1. 자구수정)(2021.2.4. 자구수정)

제29조(교류학점인정) ① 본 대학교와 학생 교환협정을 체결한 대학에 수학한 학생의 학점은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소정의 학점을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당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를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4.0 이상이거나, 7학기 이상 수강하는 학생은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매 학기당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05.3.1. 자구수정) (2015.01.23. 자구수정) (2021.6.22. 개정)

② 삭제 (2005.3.1.)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1회 6학점 이내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1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16.02.03. 신설)

⑤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과 수강신청 학점의 차이가 3학점 이하인 경우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9.12.18. 개정)

⑥ 제1항의 매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학점에 미사, 사회봉사 교과목의 학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23.4.20. 신설)

제31조(학점취득 특별시험) ①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라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교과목은 학점취득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되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국어 영역
2. 영어회화

③ 학점취득 특별시험의 응시대상과 시험기일, 방법 및 기타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외국어, 종교 관련 과목, 사회봉사과목은 공인점수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5. 3. 1. 신설)

제32조(학년 수료학점)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2021.2.4. 개정)(2023.2.7. 개정)

구분	졸업학점 130학점	졸업학점 136학점	졸업학점 140학점
1학년	33학점	34학점	35학점
2학년	65학점	68학점	70학점
3학년	98학점	102학점	105학점
4학년	130학점	136학점	140학점

제33조(교직과정) 삭제 (2005. 3. 1.)

제34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제 1전공 외의 부전공, 소단위전공, 연계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의 전공을 의무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과, 편입생, 만학도(입학 연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 학.석사연계과정을 신청한 자, 외국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05.3.1. 자구수정) (2017.12.15. 자구수정) (2022.4.22. 개정) (2023.2.7. 단서조항 추가) (2024.2.16. 개정)

② <삭제. 2022.4.22.>

③ 복수전공 이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2.4.22. 자구수정)(2023.6.21. 개정)

제34조의 1(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한다.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2021.6.22. 조 신설)

②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③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0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학위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23.2.7. 개정)

1. 학사과정 : 최소 3.5년(7학기)
2. 석사과정 : 1.5년(3학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과정 중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6학

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⑥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수강과 이수)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한 내 수강과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기 중 수강과목의 변경은 소정 기간 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강과목은 그 성적을 얻을 수 없고 자동적으로 과락이 된다.

④ 교과목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수험자격) 각 교과목별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당해 교과목에 한하여 수험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응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시험) ①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되, 중간고사 과목은 교과목에 따라 논문, 개인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과목에 따라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③ 재시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과 평소의 성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하되 “D” 급 이상이 급제로 하고 “F” 급 이하는 낙제로 한다. (1999.9.1. 자구조정 및 항목변경)

② 학점이 없는 과목은 “P” (급) 또는 “NP” (낙)로 평가한다.

③ 추가시험은 “B” 급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④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 급	평 점	실 점
A+	4.5	95 - 100
A °	4	90 - 94
B+	3.5	85 - 89
B °	3	80 - 84
C+	2.5	75 - 79
C °	2	70 - 74
D+	1.5	65 - 69
D °	1	60 - 64
F	0	0 - 59

제39조(학점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D °이상 취득한 학점 및 “P” 로 인정된 과목에 대해서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2023.2.7. 개정)

② 편입학 학생 및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중 학칙 제15조, 제16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23.2.7. 개정)(2024.2.1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2023.2.7. 신설)

1. 전공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학부(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정한다.
2. 우리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양 교과목은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미사

2학기 이상, 사회봉사 1학기 이상, 건학이념 관련 1개 교과목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2023.2.7. 개정)

제40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 (1999.9.1. 자구수정)

②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2016.02.03.항 개정 및 호신설) (2023.2.7 개정)

1.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1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 학기 개시 후 8주 이내에 지도교수로부터 1회 이상의 학업 상담을 받고 지도교수는 상담일지를 학부(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에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2016.02.03. 신설)

④ 담당 부서는 학사경고가 확정되는 즉시 본인 및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6.02.03. 신설)

제41조(졸업시험 등) ① 해당 학부(과)에서 소정 과정을 마친 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졸업시험의 판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졸업시험을 면제한다. (2023.11.14. 개정)(2024.2.16. 단서조항 추가)

② 졸업시험 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3.11.14. 개정)

제42조(졸업)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로 정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전공 및 소단위 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전공 및 소단위 전공과정을 표시한다. (2005. 3. 1. 자구수정)(2023.6.21. 개정)

②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하고 학칙 제3조 해당자도 전기 또는 후기로 졸업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01.9.1. 자구수정) (2015.01.23. 자구수정)

제42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42조의 학사학위취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학 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은 재학 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23.4.20. 조 신설)

제43조(외국인 특별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수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력을 고사하여 허가하고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납입금

제44조(납입금 납입의무) 학생은 매 학기 등록 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록금 산정의 심의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0.12.2. 신설)

제45조(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학생 자율회비 기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001.9.1. 자구수정)

제46조(결석 또는 정학자 납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유급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47조(휴학, 복학자 등 납입금) ①<삭제. 2001.9.1.>

②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는 당해 학기의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예외규정은 학사내규로 정한다. (2001.9.1 조항삭제 및 자구수정)

제48조(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금액은 과오납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와 장학금 수혜자로서 학비감면을 받지 않고 기납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및 시간제등록생(2009.3.1.시간제등록생규정 추가신설)

제49조(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학술 연구상 이론과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50조(공개강좌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 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50조의 2(시간제등록생의 정의) 시간제등록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매 학기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50조의 3(시간제등록생의 선발) ① 시간제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은 학부(과) 단위로,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정한다. (2019.2.8. 개정)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4.22. 개정)

③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선발한다.

제50조의 4(시간제등록생의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① 시간제등록생의 학년도 및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에 관해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은 해당 학년도 재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50조의 5(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연간 24학점) 이내로 한다.

② 시간제 등록 학생이 총 140학점(그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하고 교양과목을 24학점 이상,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이상을 취득하고, 제41조의 졸업시험 등을 통과한 경우 제42조에 정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23.6.21. 개정)

제9장의 2 자체평가(2009.12.1.신설)

제50조의 6(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51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 부서(교무입학처)에서 즉시 처리, 지도하도록 한다. (2019.2.8. 직제개편)(2020.4.21. 개정)(2022.4.22. 개정)

1. 성행이 불량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장학금

제53조(장학금) 본 대학교의 장학금은 표창금과 학비 보조금으로 구분하며,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증지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1.9.1. 자구수정)

제12장 직 제

제54조(직제) 본 대학교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001.9.1. 자구수정)

제13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55조(부속 및 부설기관) 부속 및 부설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3장의 2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2011.7.1. 자구수정)

제55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를 둔다. (2011.7.1. 자구수정) (2022.6.21. 자구수정)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타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004.4.20. 본조 신설)

제14장 교무위원회

제56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57조(구성)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처장 및 부처장, 대학원장, 학부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되, 총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자 외의 인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2013.4.22. 추가삽입) (2019.2.8. 직제개편) (2023.2.7. 개정)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8조(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육 전반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5장 교수회

제59조(교수회) ①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둘 수 있다. (2023.2.7. 개정)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2012.7.1. 자구수정)

③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체 교수의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이를 소집한다.

④ 교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2001.9.1. 항목추가 및 자구수정)

제60조(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한다. (2001.9.1. 자구수정 및 항목변경)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2. 7>
4. <삭제. 2023. 2. 7>
5. 대학평의원회의 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2023.2.7. 추가)
6.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제16장 학생활동

제61조(대학 생활) 학생은 따로 정하는 소정 규칙을 준수하며 학업에 정진하고 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62조(학생활동)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총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생은 총학생회 및 그 산하단체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으며, 총학생회가 원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 및 그 산하단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63조(학생지도)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4조(과외활동) ① 학생이 과외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절차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한다.

제65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008.3.1. 개정)

제66조(집회 및 행사) 총학생회가 집회 및 행사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학생 간행물 및 홍보물) 학생의 간행물 및 홍보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장 교 원

제68조(강의시간 배정 한도) 전임교수는 주당 4일 이상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 시간 수는 2과목 이상을 담당할 경우 주 9시간, 1과목을 담당할 경우 주당 12시간을 배정하되 15시간은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001.9.1. 및 자구수정 단서조항 삭제)

제69조(보직 교수) 보직 교수의 주당 책임 시간 수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22.6.21. 자구수정)

제70조(보충) 불가피한 경우 전임교수의 담당 시간이 미달될 때에는 그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는 초과시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1조(수강 학생 수 초과) 수강 학생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함으로써 인한 교수의 과중한 부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72조(강의 외 책임) 본교의 전임교수는 강의 이외에도 학생지도와 입학선발 등 중요 학사 업무에 참여할 책임을 진다.

제18장 학칙개정

제73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교 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주관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공고) ① 개정안을 제출받은 학칙개정 주관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16.12.14. 공고일수정)

② 총장은 학칙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의견제출) ① 각 부서장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6조(심의.공포)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이를 공포한다. (2016.12.14. 자구수정)

제77조(보고) (2011.12.28.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는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운영한 방송·통신에 의한 시범강좌에 대하여는 이 변경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및 제34조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6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는 2023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34조, 제39조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제41조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